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손자용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서울사무소” 설치 : (안 제 56조의2)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둠 : (안 제56조의3)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소관사무 수행 : (안 제56조의4)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며,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두며,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의 소관사무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회 및 정당,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도정주요 시책추진 등을 위해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조직개편이 민선5기 출범이후 2010년 8월과 12월, 2011년 3월과 7월에 이어 금번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지나치게 잦은 측면이 있는바, 향후 조직개편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의 정원운용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